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2
----------	-----

발의연월일 : 2024. 5. 31.

발 의 자 : 이정애, 조성대, 박윤옥,  
박경원, 정현미, 이수련,  
한근수, 김동훈, 김지훈(민)  
김상수

### 1. 제안 이유

기 조례로 제정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나.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안제5조)
- 다.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 지정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 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대상 감독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비용추계서 : 덧붙임

5. 관계법령 : 덧붙임

##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2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31조제1항 각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관리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7. “모범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시행 추진을 적극 노력해야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은 남양주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산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정증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이 훼손·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8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표지판 지원
4.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제12조(모범사업자의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감독)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한다.

제14조(준용)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재)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		연 락 처
사 업 자	성명(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남양주시청
수 수 료	없 음

지정번호 : 제        호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 유효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직인



■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7조 관련)

###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40cm(가로) × 30cm(세로)

나. 스테인레스판 음각부식

###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지정번호 :

지정일 :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_\_\_\_\_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남 양 주 시 장 (직인)**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담녹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을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기 제정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와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관련 조례에 미작성 사유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 4. 작성자

교통국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 「자동차관리법」

-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